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24-11)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건 명	위·수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자체 사용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 구축사업
- 위탁/수탁기관 : 도 / △△주식회사
- 사업비 : 7,170,000천원 ※ 예산과목 :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수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 주요내용 : ◎◎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모션 마케팅, 홍보 등

□ 신청사유

- 도(기업육성과)는 △△주식회사와 「2023년 □□ 구축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 구축사업”(이하 “해당 사업”이라고 함)에 관한 사무를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 ◎◎앱 등 경기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 운영·구축,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등을 위한 것임
- 도(기업육성과)는 ◎◎앱의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1%↔민간배달앱 6.8% 이상)에 따른 부족한 운영비 확보와 ◎◎앱 활성화를 위한 수탁자 동기부여 등을 위해 해당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탁기관 자체 수입으로 하는 등의 수입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으로,
 - 올해 추진 예정인 “2024년 □□ 구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탁기관 자체 사용(귀속)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 6. 30.)
- 「2024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사유

- 道가 △△주식회사와 “2024년 □□ 구축사업” 사무에 대한 위·수탁계약 체결 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탁기관에서 자체 사용(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검토의견

- △△주식회사는 道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으로,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 및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매년 道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 구축사업” 사무를 운영하고 있음
- 먼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예산의 편성·집행 및 자금 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이라 함) 제2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 6. 30.) 및 「2024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받은 사업의 수입은 기관의 수입이 아니므로 업무를 대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금,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한편, 道 사무의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임에 따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2 제3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그런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위탁 유형을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예산지원형은 다시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하면서,
 - 수탁기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항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로서 도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등을 민간위탁 하는 유형인 ‘시설형’ 또는 ‘수익창출형’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 “□□ 구축사업”은 道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이 아닌 도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유형 중 ‘사무형’에 해당됨(道 기획담당관-3117호, 2024. 3. 12.)
- 따라서, △△주식회사는 “2024년 □□ 구축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道의 세입으로서 사업 종료 시 정산하여 道에 반납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道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 수탁기관 자체 수입으로서 해당 사업 경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 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